

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(2차)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5일

상 주 시



1. 공고명 :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(명부 작성)
2. 안전점검 수행 대상: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
3. 신청자격 (모두 해당)
 - 가.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 진단전문기관('토목' 또는 '종합' 분야 등록 업체)
4. 모집기간 및 방법
 - 가. 접수기간: 2021.2.25.(목) 09:00 ~ 2020.3.17.(수) 18:00(21일간)
 - 나. 제출장소: 상주시청 건설과(별관1, 1층)
 - 다. 등록명부 공고: 2021. 3. 23.(화)
(상주시청 홈페이지 sangju.go.kr- 고시공고)
 - 라. 접수방법
 - 우편(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 -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접수 바랍니다.
 - 접수결과를 필히 확인하고 접수결과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- 건설과 방문접수(대리 접수시 위임장 및 신청자 신분증 첨부)

마. 제출서류

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.
-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.
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.
-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.
-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.
- USB 또는 CD 1개.(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동일한 PDF파일 포함)

5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되고 지정결정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나.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지정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명부에 지정(작성)하며,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합니다.
- 다.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간입니다.
- 라. 등록명부는 상주시 사업부서 및 인허가부서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활용·적용 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.
- 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설과(☎054-537-75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